

중소기업형 계약(응용전자공)학과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0. 9. 1
제1차 개정 2012. 5.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대학원학칙 제53조8(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명시된 계약학과의 설치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계약학과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개정
2.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학과운영
3. 계약학과 폐지와 학생 정원
4. 계약학과 예산과 결산
5. 계약학과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
6.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인 대학원 원장보, 대학원과 협약기관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 원장보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전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는 대학원 교학부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의무) 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응용전자공)학과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응용전자공)학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계약학과 요원) ① 계약(응용전자공)학과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직원은 대학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재원) 계약(응용전자공)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 협정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지원금, 대학원생 입학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계약(응용전자공)학과와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등) 계약(응용전자공)학과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5, 2012.5.14)

이 운영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